

第23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9.8.26. ~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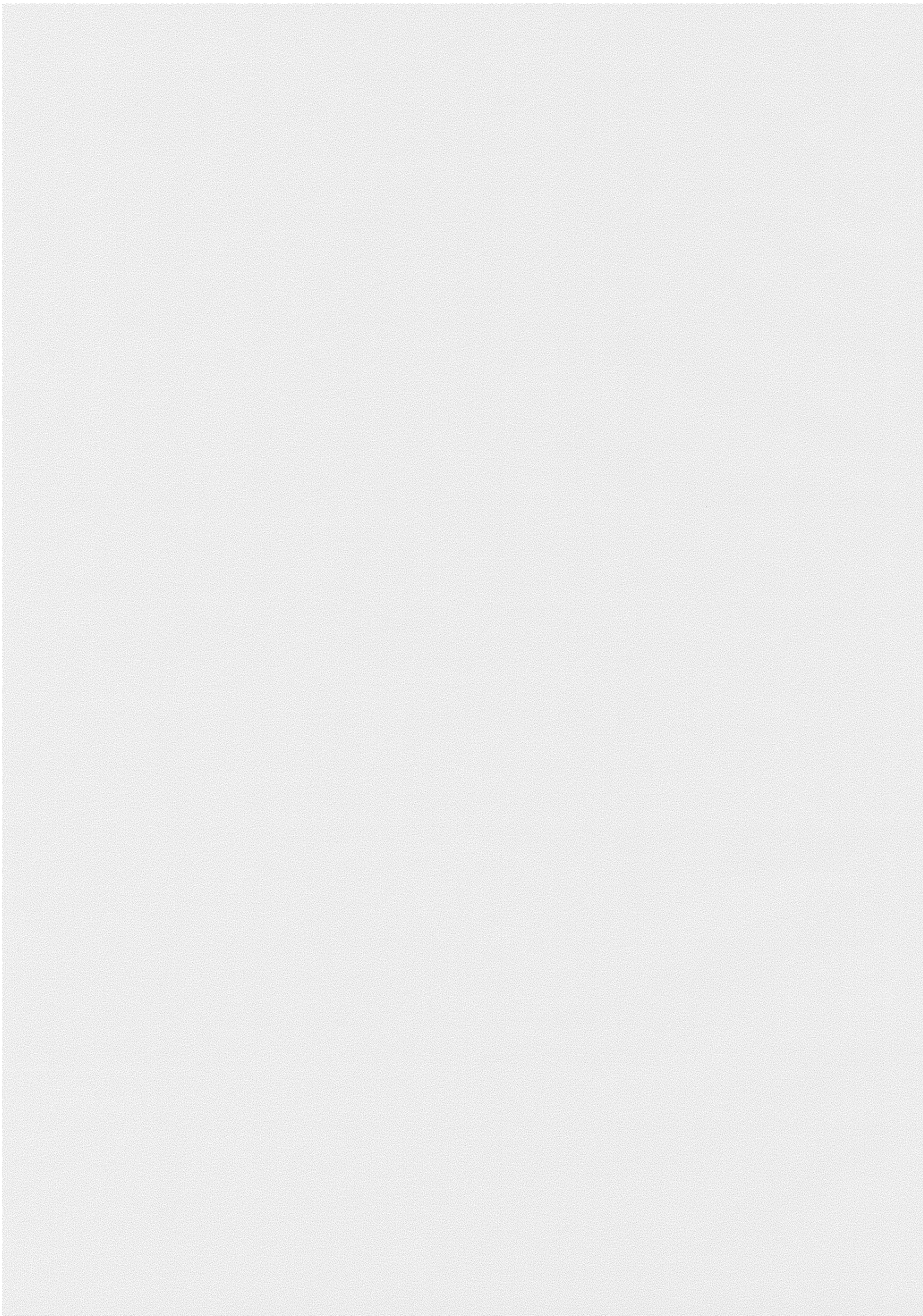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3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291
II.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93
III.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99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305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07
3.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25
4.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331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8월 26일 (수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23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객종수)

(11시 00분 개식)

(일동 착석)

### ● 의사담당 객종수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8월 26일 (수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3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감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3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영용 위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영용 위원 외 6인 발의)
5. 감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 의장 걱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곽정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발령된 홍준기 서기관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된 황익상 서기관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다 기획관리과장으로 발령된 박노화 서기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사과장으로 재직하다 재무과장으로 발령된 김길흠 서기관입니다.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곽정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경과보고

(11시 04분)

## ● 의장 곽정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의사과장 김석환

의사과장 김석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 및 안건접수 상황과 안건 이송에 대한 처리결과,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8월 18일 성영용 교육위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의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9년 8월 19일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이송한 안건 5건 중 2008회계연도 충청북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09년 7월 23일 제28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충청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및 집기 구입비 등 5건의 사업에서 총 36억 2,28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34조 제1항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같은 날 제28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 학원의설립·운영및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처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걱정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7분)

● 의장 걱정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8월 27일은 감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8월 28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 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원

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 7명이 발의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을 제8조로, 동법 제19조2항을 제17조3항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며 행정처분의 종류를 법에 따른 용어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평생교육법 제13조4항을 제21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걱정수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성영용 교육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소위원회구성 의견

(11시 13분)

● 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소위원회 구성의견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소위원회구성 의견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감사소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교육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도 제시를 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체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소위원회에서 수립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8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영용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우승구,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이수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9년 8월 28일 (금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영용 위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영용 위원 외 6인 발의)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소위원회위원장)

(11시 00분 개의)

### ● 의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우승구 부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부교육감협의회 참석차, 이수철 중등교육과장께서는 하

반기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선발위원회 참석차, 이종찬 체육보건급식과장께서는 제29회 충주 청주 간 시·군대학 역전 마라톤대회 참석차, 박노화 기획관리과장께서는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사례발표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  
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교육위원 7명 전원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써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의건

(11시 02분)

● 의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소위원회 서수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서수웅

감사소위원회위원장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으로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일정별 대상기관은,  
9월 23일 충청북도제천교육청,  
9월 24일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9월 25일 충청북도진천교육청,  
9월 28일 충청북도옥천교육청,  
9월 29일 충청북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문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별로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고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2009년 9월 14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제233회 정기회에서 채택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관정수

서수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감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즉시 집행기관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폐회)

[제231회-제2차 본회의]

---

○ 출석위원 : 6명

의장 광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정무.

○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총무과장 황익상,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별첨 4)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9. 9.

의 장	곽 정 수	郭正守
위 원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이 상 일	李相一
의사국장	구 명 회	具明會



(별첨 1)

# 의 사 일 정 (안)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9. 8. 26. ~ 8. 28.(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8월 26일(수)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2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9. 8. 26. ~ 8. 28. (3일간) 2. 충청북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8월 27일(목) 11:00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감사소위원회	본회의휴회
8월 28일(금) 11:00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의 결  의 결 의 결



(별첨 2)

의안번호	제 231-1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8월 일 (제231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영용 위원 외 6인
제출연월일	2009년 8월 18일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1
----------	-------

제출연월일 : 2009. 8. 18.

제 출 자 : 곽정수, 김병우  
김부용,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 무

##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989호, 2008.3.28,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용어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종류를 법에 따른 용어로 개정함(안 제9조)

- (1)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는 휴원, 폐원을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로 하며,
- (2)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중지로 함

나. 인용 조문을 개정함

- (1)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로 함(안 제2조의3, 제2조의4)
- (2)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함(안 제9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각각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보험가입"을 "보험"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각각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를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0.8인"을 "0.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의4 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의3 제5호 내지 제6호의"를 "제2조의3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조의5 제1항 중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을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각각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1인"을 "1명"으로 각각 한다.

제2조의6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소속 하에"를 "소속으로"로 각각 한다.

제3조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00까지로 하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의5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0일이내에"를 "10일 이내에"로 각각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강료 등 금액통보)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영 제7조 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절차, 기타"를 "절차 및 그 밖"으로 각각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중지)**, 등록말소(교습소의 경우에는 폐지)로 하되,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 제2조의4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조의5 제1항과 제2항, 제2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각각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 쓴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89호, 2008.3.28, 공포·시행]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 3. (생략)

[전문개정 2007.12.2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타법개정]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p> <p>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li> <li>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li> </ol> <p>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루</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p> <p>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li> <li>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li> </ol> <p>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에 목적을 이유로 학습</p>



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조의2(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

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조의2(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p>구 및 설비</p> <p>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당·회의실·사무실</li> <li>2. 학습자료실·도서실</li> <li>3. 상담실</li> <li>4. 컴퓨터실</li> <li>5. 방송·통신시설</li> <li>6. 체육시설·오락시설 <u>기타</u> 편의시설</li> <li>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li> </ol> <p>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b>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b>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li>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li>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li> </ol>	<p>교구 및 설비</p> <p>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당·회의실·사무실</li> <li>2. 학습자료실·도서실</li> <li>3. 상담실</li> <li>4. 컴퓨터실</li> <li>5. 방송·통신시설</li> <li>6. 체육시설·오락시설 <u>그 밖의</u> 편의시설</li> <li>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li> </ol> <p>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b>법 제8조에 따른</b>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li>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li>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li> </ol>
--------------------------------------------------------------------------------------------------------------------------------------------------------------------------------------------------------------------------------------------------------------------------------------------------------------------------------------------------------------------------------------------------------------------------------------------------------------------------------------------------------------------------------------------------------------------------------------------------------------------------------------------------------------------------------------------------------------------------------------------	---------------------------------------------------------------------------------------------------------------------------------------------------------------------------------------------------------------------------------------------------------------------------------------------------------------------------------------------------------------------------------------------------------------------------------------------------------------------------------------------------------------------------------------------------------------------------------------------------------------------------------------------------------------------------------------------------------------------------------------

<p>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u>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p> <p>② <u>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u>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p> <p>③ <u>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u>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p>	<p>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u>법 제8조에 따른</u>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p> <p>② <u>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u>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p> <p>③ <u>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u>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p>
---------------------------------------------------------------------------------------------------------------------------------------------------------------------------------------------------------------------------------------------------------------------------------------------------------------------------------------------------------------------------------------------------------------------------------------------------------------------------------------------------------------------------------------------------------------------------------------------------------------------------------	-----------------------------------------------------------------------------------------------------------------------------------------------------------------------------------------------------------------------------------------------------------------------------------------------------------------------------------------------------------------------------------------------------------------------------------------------------------------------------------------------------------------------------------------------------------------------------------------------------------

<p>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u>당해</u>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p> <p>④ 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u>제2조의3제5호 내지 제6호</u>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⑤ 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u>범위안에서</u>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 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p> <p>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u>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p> <p>② <u>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p>	<p>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u>해당</u>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p> <p>④ 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u>제2조의3제5호부터 제6호까지</u>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⑤ 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u>범위에서</u>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 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p> <p>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u>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u>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p> <p>② <u>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u>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p>
-------------------------------------------------------------------------------------------------------------------------------------------------------------------------------------------------------------------------------------------------------------------------------------------------------------------------------------------------------------------------------------------------------------------------------------------------------------------------------------------------------------------------------------------------------------------------------------------------------------------------------------------------------------------------	-------------------------------------------------------------------------------------------------------------------------------------------------------------------------------------------------------------------------------------------------------------------------------------------------------------------------------------------------------------------------------------------------------------------------------------------------------------------------------------------------------------------------------------------------------------------------------------------------------------------------------------------------------------

<p>여야 한다.</p> <p>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p> <p>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p> <p>제2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 교육감은 제2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p>	<p>여야 한다.</p> <p>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p> <p>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p> <p>제2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 교육감은 제2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p>
----------------------------------------------------------------------------------------------------------------------------------------------------------------------------------------------------------------------------------------------------------------------------------------------------------------------------------------------------------------------------------------------------------------------------------------------------------------------------------------------------------------------------------------------------------------------------------------------------------------------	-------------------------------------------------------------------------------------------------------------------------------------------------------------------------------------------------------------------------------------------------------------------------------------------------------------------------------------------------------------------------------------------------------------------------------------------------------------------------------------------------------------------------------------------------------------------------------------------------------------

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p>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00까지로 하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p>	<p>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00까지로 하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p>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 제2항, 제12조 및 <u>제2조의5의</u> 규정에 의하여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통보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 제2항, 제12조 및 <u>제2조의5에</u>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채용 통보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수강료 등 금액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영 제7조 제2항 및 <u>제14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p>	<p>제8조(수강료 등 금액통보)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영 제7조 제2항 및 <u>제14조제2항에</u> 따라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p>
<p>제9조(행정처분) <u>법 제17조의</u>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p>	<p>제9조(행정처분) <u>법 제17조에</u>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p>

<p>한다.</p> <p>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 명령, <u>휴원, 폐원으로 하되 휴원 및 시정 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u></p> <p>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p> <p>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등) <u>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다.</p> <p>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 명령, <u>교습정지(개인과의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중지), 등록말소(교습소의 경우에는 폐지)로 하되,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u></p> <p>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p> <p>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등) <u>법 제17조제3항에 따른</u>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	------------------------------------------------------------------------------------------------------------------------------------------------------------------------------------------------------------------------------------------------------------------------------------------------------------------------------------------------------------------------------------



(별첨 3)

의안번호	제 231-2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8월 일 (제231회)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영용 위원 외 6인
제출연월일	2009년 8월 18일

#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2
----------	-------

제출연월일 : 2009. 8. 18.

제 출 자 :곽정수,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 무

##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법률 제8852호, 2008.2.29,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을 제21조로 함(안 제1조)

나. 용어 등의 개정

- (1) "~의 규정에 의거" → "에 따라"
- (2) "기타" → "그 밖에"
- (3)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기타

- (1) 입법예고 : 생략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5항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평생교육법 [법률 제9641호, 2008.2.29, 공포·시행]

- 제21조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u> 충청북도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평생교육법</u> 」 제21조에 따라 ----- -----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u>기타</u>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제4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 ----- <u>범위에서</u> -----



(별첨 4)

의안번호	제 231-3 호
의결 연월일	2009년 8월 일 (제 231 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발의자	감사소위원회위원장
발의연월일	2009년 8월 27일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제231-3호
----------	---------

발의일자 : 2009. 8. 27.

발 의 자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 1. 발의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감사의 목적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감사기간 : 5일

2009. 9. 23.(수)~9. 29.(화)



**다.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 (1) 2009. 9. 23.(수) 10:00, 충청북도제천교육청
- (2) 2009. 9. 24.(목) 10:00,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 (3) 2009. 9. 25.(금) 10:00, 충청북도진천교육청
- (4) 2009. 9. 28.(월) 10:00, 충청북도옥천교육청
- (5) 2009. 9. 29.(화) 10:00, 충청북도교육청

**라. 감사소위원회 구성 : 의장을 제외한 교육위원 6명**

**마.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함.

**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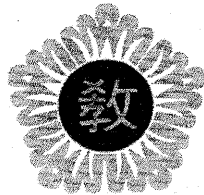
- (1)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대상
  -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지역교육청 : 교육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
- (2) 출석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일
  - 장 소 : 해당감사장소

※ 붙임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열린의정·연구하는  
충북교육위원회

— 2009년도 —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http://cbboed.or.kr>

# 목 차

1. 감사의 목적 .....	336
2. 감사일정 및 장소 .....	336
3. 관련법규 .....	336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관계공무원 지정 .....	337
5.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	337
6. 감사요령 .....	337
7.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338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338
9. 행정사항 .....	339
※ 붙임 내역	
○ (별첨1) 감사장 좌석 배치도 .....	341
○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서식) .....	343
○ (별첨3) 증인선서문 .....	344
○ (별첨4) 수감요약서 .....	345
○ (별첨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 .....	346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1. 감사의 목적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위원회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2009. 9. 23.(수) 10:00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지정장소
2009. 9. 24.(목) 10:00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지정장소
2009. 9. 25.(금) 10:00	충청북도진천교육청	지정장소
2009. 9. 28.(월) 10:00	충청북도옥천교육청	지정장소
2009. 9. 29.(화) 10:00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 3.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중전 같은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  
같은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관계공무원 지정

○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관계공무원
서수웅	김병우	김부웅 성영용 이상일 정 무	의사국(과)장 의 사 담 당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속기사 1명

#### 5.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
- 감사자료 요구 내역 : (별첨 5)

#### 6. 감사요령

○ 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별첨 3)
-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0분 이내)
- 질의 및 답변
- 감사종료 선언

## 7.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대상

-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과장급이상 공무원
- 지역교육청 : 교육장, 과장급이상 공무원

### ○ 출석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일
- 장 소 : 해당 감사장소

##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 방침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 작성 절차

-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 감사실시 직후에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작성 및 채택
- 제233회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

## 9. 행정사항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 : 피감사기관별로 각 10부
- 각 위원별 요구서에 의한 감사자료
  - 전 위원 통합분 3부, 위원별 발췌분 각 1부, 전 위원 통합분 자료는 별도 파일 제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자료 (교육청 요람 등) : 각 10부씩
- 제출기일 : 9. 14.(월) 12:00까지
- 피감사기관은 수감요약서(별첨 4)를 작성하여 수감 당일 종료후 **20:00까지** 교육위원회 의사국(담당자 임민순 전자문서 메일)으로 제출
- 대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대외비 : 비공개자료** 표시 제출
-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 : (별첨1) '감사장 좌석배치도' 참조
  - 명패준비 : 위원장, 위원, 기관장, 기자석 등
  - 방송설비 : 마이크는 위원장석·감사위원석·기관장석·발언대에 각 1개씩 설치
  - 녹음준비 : 녹음장비 및 카세트 테이프 준비

**(※녹음불량 사례 없도록 주의)**

- 출석대상 공무원 명단 : (별첨2)서식에 의거 감사당일 감사위원 및 감사 진행 보좌 직원석에 배부

○ 기타 지원요청 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 감사위원 이동용 버스 1대 지원(2009. 9. 23. ~ 9. 29.)

- 수감기관 공통사항

- 속기석에 3구용 멀티탭 배선(속기장비 연결용)
- 의사국 직원석에 노트북, 프린터 설치(인터넷 회선 포함)

※ 붙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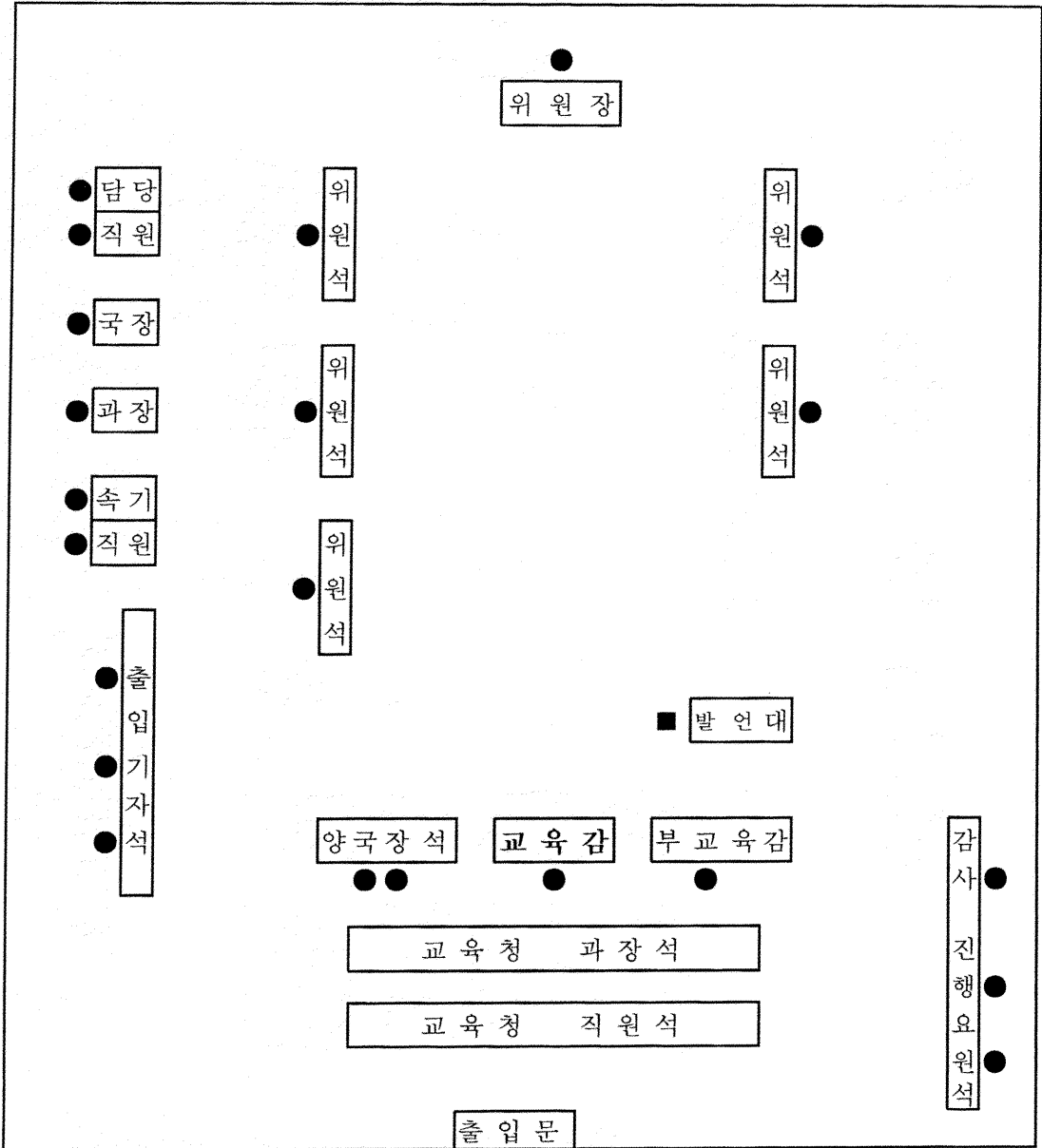
1. (별첨1, 1-1) 감사장 좌석 배치도 1부.
2.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서식) 1부.
3. (별첨3) 증인선서문 1부.
4. (별첨4) 수감요약서 1부.
5. (별첨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 1부.



(별첨1)

# 감사장 좌석 배치도

<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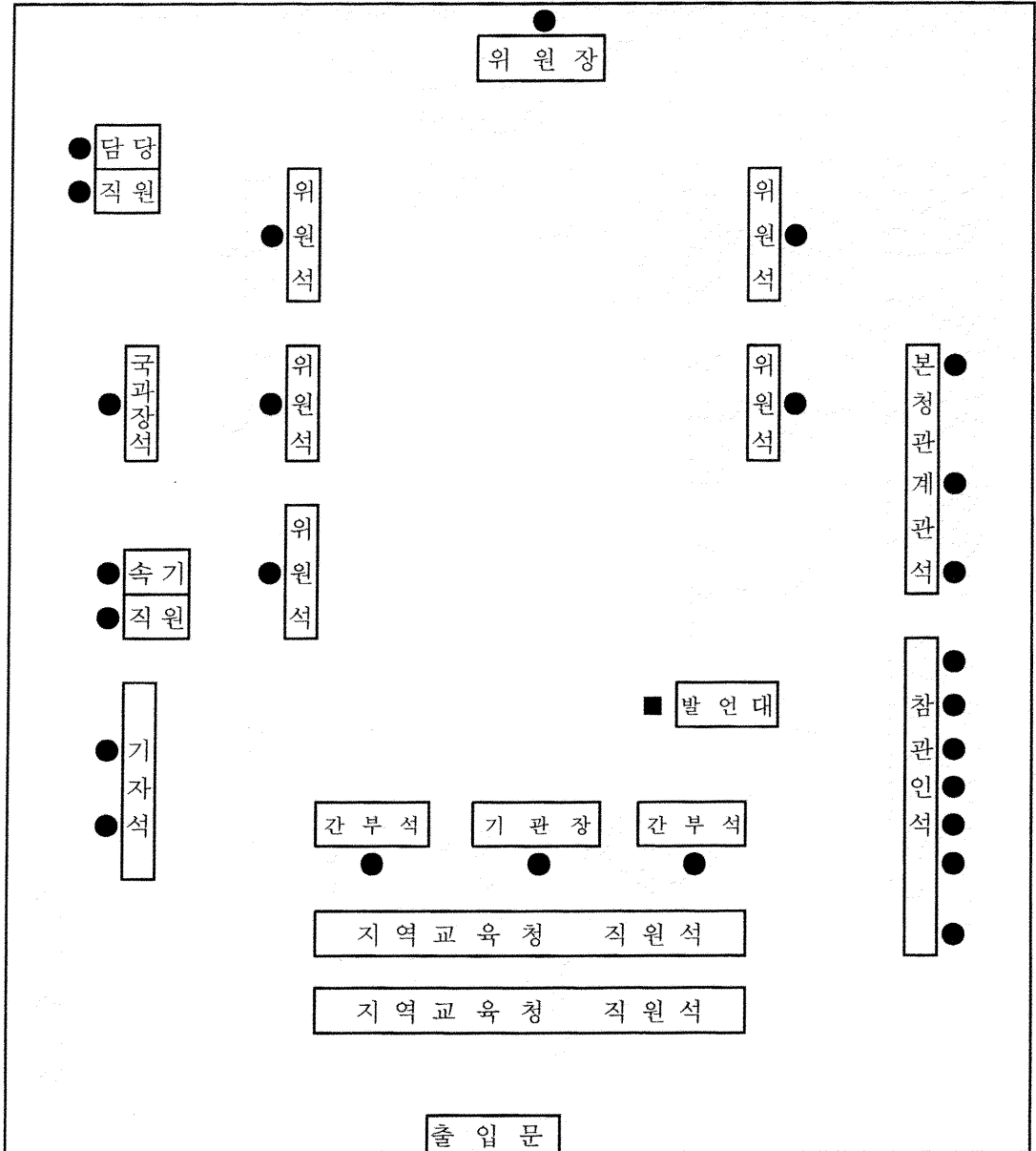


※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첨1-1)

# 감사장 좌석 배치도

<지역교육청>



※ 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첨2)

### 출석공무원 명단

□ 기관명 :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별첨3)

##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9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직 성명 (인)

(별첨 4)

# 수 감 요 약 서

감사일 :

기 관 명 :

(직인)

위원명	질의요지	답변요지

(별첨5)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

## 2009. 행정사무감사 위원별 자료요구 현황

### □ 위원별 자료요구 건수

위원별 구분	김병우	김부용	서수용	성영용	이상일	정무	계
자료요구건수	11	9	2	14	2	11	49

### □ 위원별 자료요구 목록

위원명	순번	자료요구 목록	비 고
김병우	1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및 발령 현황	
	2	PAPS(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측정 장비 구비 현황	
	3	도내 각 학교별 교원 및 직원단체 가입 현황	
	4	교원단체담당반 업무 실적	
	5	초·중·고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	
	6	2009년 각급학교 학생 복지예산 편성내역	
	7	영어 체험(전용) 교실 구축 현황	
	8	2009년 학력 신장 계획 관련	
	9	2009년 교복공동구매 현황	
	10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결과	
	11	수산초·중 사인(교감 비교육적 지도 관련) 경위 및 처리 결과	

위원명	순번	자료요구 목록	비 고
김부용	1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예산 지원 현황	
	2	지자체 사업예산 지원 현황	
	3	주요 사학재단의 전입금 현황	
	4	단설유치원 교직원 배치현황	
	5	교육감 공약(4개 목표, 20개 영역, 69개 실천과제) 사업이행 점검	
	6	지역교육청에 비정규직 인력 배치 현황	
	7	지역교육청별 여비 지급 현황	
	8	승진·전보시 축하 화분 보내기를 다른 방법으로 계도한 실적 또는 사례	
	9	2009년 수감기관 수감자료 제출	
서수용	1	단재상 사도부문 수상자 현황	
	2	고등학생 학업포기자 현황	
성영용	1	학교병원 운영현황	
	2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현황	
	3	권역별 심화학습 운영	
	4	교육정책 청문관계 운영 현황	
	5	원어민교사의 확대배치 현황	
	6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의 상반기 실적 및 중간평가	
	7	길거리 상담의 상반기 실적 및 문제점	
	8	학교관리자 노사관계 연수 중 교장 교감의 연수 실적	
	9	냉방기 개선사업 선별적 적용 방향	
	10	2009학년도 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 강사 현황	



위원명	순번	자료요구 목록	비고
성영용	11	학교별 학교회계 세출 예·결산 현황	
	12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실태	
	13	제천학생야영장 운영대책 및 활성화 방안	
	14	제천학생회관 수영장 운영현황	
이상일	1	방과후 중심학교(에듀코어스쿨) 운영 현황	
	2	비만치료 지도교실 운영	
정무	1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확보 상황	
	2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수 현황	
	3	초등학교 실과 수업을 위한 실습실 실태 조사	
	4	전국 소년 체육대회 시·군 교육청별 메달 현황	
	5	일선학교의 소방 안전 교육 및 소방정밀 점검 현황	
	6	특수학급 설치교의 장애 이해 및 체험활동 실시 현황	
	7	수업연구 발표대회 참가 입상자 현황	
	8	학교 급식 실태 조사	
	9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현황	
	10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지원 현황	
	11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과 관련하여 관내 중학생의 외지고등학교 진학 현황	

□ 요구위원 : 김병우 위원

1.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및 발령 현황 (2009. 9. 1현재) : 도교육청

(단위:명)

선발 연도	구 분		선발 인원	연수 인원	연도별 발령인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기	
	교장 (원장)	유치원	남							
			녀							
		초등	남							
			녀							
		중등	남							
			녀							
	교감 (원감)	유치원	남							
			녀							
		초등	남							
			녀							
		중등	남							
			녀							
전문직	유치원	남								
		녀								
	초등	남								
		녀								
	중등	남								
		녀								

<작성요령>

- 대상기간 : 2006~2009년(연도별 작성)
- 김병우 위원, 김부웅 위원 요구자료(김부웅 위원 제출 자료에도 기재)

2. PAPS(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측정 장비 구비 현황 (2009. 9. 1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현황

(단위:천원)

교육청	급별	학교명	장비구입 총액	체지방측정기			제품선정 위원회 구성여부	선정 기준	교과부 기준준수 여부	사후처방 제공여부
				제품명	제조사	구매가				

**<작성요령>**

- 급별 : 초·중·고 별로 작성
- 여부는 ○, ×로 표시
- 장비구입총액 : 필수장비+권장장비+선택장비 등 측정 장비 구입에 소요된 예산 총액
- 선정기준 : 선정과정에서 중시한 기준 순으로 기재
- 교과부 기준 준수 여부 : 체지방 측정기 선정시 교과부가 제시한 기준(우수체육용구 인증 확인 등)을 준수하였는가
- 사후 처방 제공 여부 : 선정한 체지방 측정기 및 관련 프로그램이 비만아·저체력아 등에 대한 판별 후 운동 및 식이처방 등 건강관리(지도)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 지역교육청 구비~관리 제품은 지역교육청에서 작성(학교명 란에 교육청명)하고 '장비구입총액' 및 '구매가'란에 '단가×대수=총액'으로 기재

나. 장비구입 관련 지도감독 실적

- (1) 구입예산 집행 지침 하달 등 관련자료 일체
- (2) 양질의 제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적극적 행정 사례 (공정하고 충분한 제품설명회 주선 등)

**3. 도내 각 학교별 교원 및 직원 단체 가입 현황 (2009. 8. 31 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단위:명)

학교명	총교원수	교원단체	교원노조				무소속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작성요령>**

- 대상 : 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교사(계약기간 6개월 이상), 시간강사 포함
- 가입자 : 월정액의 회비 또는 조합비를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여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입금한 인원수 (학교알리미 공시항목)
- '한국교총'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교조'는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조'는 자유교원조합, '대한교조'는 대한교원조합의 약칭
-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간은 중복 가입도 가능

나. 직원단체 및 공무원노조 가입자

(단위:명)

학교명	총직원수	공무원노조					무소속
		전공노	민공노	전기노	공공노조	교육청노조	

<작성요령>

- 대상 : 국·공·사립학교 일반직, 기능직, 비정규직(계약기간 6개월 이상) 포함
- 가입자 : 해당단체에 자의의사로 가입하여 재정부담 등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실 인원
- '전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공노'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기노'는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공공노조'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교육청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노동조합(전국교육기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의 약칭

4. 교원단체담당반 업무 실적 : 도교육청

- 가. 담당별 소관업무 (2009. 8. 31 현재)
- 나. 2008~2009년 8월까지의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등록대장 사본 제출
- 다. 2008~2009년 8월까지의 출장 내역 (출장자, 목적, 기간 포함)
- 라. 2008~2009년 8월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월별, 총액, 1인당 평균액)

5. 초·중·고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 (2009년 8월31일 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원어민교사 배치현황

교육청	급 별									합 계			배치비율 (b/a)
	초			중			고			학교수 (a)	배치교수 (b)	배치인원수 (c)	
	학교수	배치교수	배치인원수	학교수	배치교수	배치인원수	학교수	배치교수	배치인원수				
합계													

나. 원어민교사 자격 현황

교육청	총 배치 인원수 (a)	교사자격증 유무				TESOL자격 이수			
		소지자		미소지자		이수자		미이수자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합계									

<작성요령>

- 교사자격증 비율 : 소지(미소지)자수/총 배치 인원수(a)
- TESOL자격 이수 비율 : 이수(미이수)자수/총 배치 인원수(a)

6. 2009년 각급학교 학생 복지에산 편성내역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천원)

교육청	급별	학교명	학급수	학생 학습준비물 비			학생자치 활동비			학급 운영비			도서구입비	
				총액	학생1인 배정액	한자 학습지 구입비	총액	학교 예산 대비율	집행 내역	총액	학급당 배정액	용도	총액	학교 예산 대비율
평균		초												
		중												
		고												

<작성요령>

- 급별 : 초·중·고 별로 작성
- 평균 : 지역교육청 단위로 굵은선 부분만 집계 (원단위 정수)
- 한자학습지 구입비 : 학습준비물비 중 지출한 총액 표시
- 학교예산 대비율 : 학교운영비 중 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학생자치활동비 집행내역 : 학생자치회 운영비, 학생회 수련활동비, 학생동아리 활동지원비, 클럽활동경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항목 기재
- 학급운영비 용도 : 주된 사례 기재

7. 영어 체험(전용) 교실 구축 현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천원)

학교명	시공연도	예산액	집행액	구성 내역	구축업체	계약형태

<작성요령>

- 구성내역 : 영어체험(전용)교실의 코너 구성 및 주요 장비 기재
- 계약 형태 : '수의계약' '공개입찰' '조달신청' 등으로 표시

8. 2009년 학력 신장 계획 관련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학력신장 관련 각종 계획(계획서 사본 제출 - 목록표 작성)

<작성요령>

- 도교육청, 11개 시·군교육청 작성

나. 2009년 여름방학 중 학력신장과 관련한 활동 및 계획, 실적 제출

<작성요령>

- 도교육청 도내 초, 중학교 학교별 작성

9. 2009년 교복공동구매 현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청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공동구매 학교수	비고
	중 학교			
	고등학교			

10.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결과 : 도교육청, 청주, 청원, 보은, 음성교육청

교육청	시정·처리 요구사항	이행 결과	비고

11. 수산초·중 사안(교감 비교육적 지도 관련) 경위 및 처리 결과(상담교사 활동 내용 - 면담기록 포함) : 도교육청

□ 요구위원 : 김부웅 위원

1.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예산 지원 현황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단위:천원)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사업내역	예산액	비고

<작성요령>

- 작성대상 사업 : 세출예산서상 '방과후학교운영' 세부사업에 포함된 사업내역
- 교육청별 초등학교 학급기준 2개교 지정(총 6개교)
  - 12학급 이하 2교, 13학급~30학급 미만 2교, 30학급 이상 2교
- 교육청별 중학교 학급기준 2개교 지정(총 6개교)
  - 6학급 이하 2교, 7학급~12학급 미만 2교, 12학급 이상 2교
- 학급 기준별 사업내역이 가장 많은 학교 지정 6개교(초3, 중3), 학급 기준별 사업내역이 가장 적은 학교 지정 6개교(초3, 중3) 제출

2. 지자체 사업예산 지원 현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천원)

도·시·군별	08년도 지원액	09년 상반기 지원액	비고
계			

3. 주요 사학재단의 전입금 현황 : 도교육청

(단위:천원)

주요 법인명	2008년 부담	전입율(%)	교특 지원액
청석			
서원			
대원			
세광			
일신			
신흥			
미덕			
형석			

4. 단설유치원 교직원 배치현황 : 지역교육청

교육청	단설유치원명	원감 배치여부	남자 조무원 배치여부

<작성요령>

○ 배치유무를 ○,×로 표시

5. 교육감 공약( 4개 목표, 20개 영역, 69개 실천과제) 사업 이행 점검

가. 방학 없는 유치원 종일반 확대운영 : 지역교육청

교육청	유치원 수	방학중 종일반 운영 원수	이행율

나. 강한학교(strong school) 학생지도권 보장을 위한 시책과 사례 : 도교육청

다. 농촌학생들의 통학 편의 완전 해결 : 지역교육청

교육청	면이하 학교수 (A)	보유학교수 (B)	미보유 학교수 (C=A-B)	미보유 학교명	미보유교 통학방법	비고

<작성요령>

- 보유학교수 : 통학버스 또는 임대차량 보유 학교수
- 통학방법 : 도보, 대중교통(버스, 택시), 기타 등

라. 학교급식 직영 100%완료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청	급별	급식학교 현황			직영 전환시기			위탁급식교명	비고
		직영	위탁	계	2009년	2010년	2011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마. 냉방시설 100% 완료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청	급별	학교수	미설치학교수	이행율	비고(미설치교명)
	초				
	중				
	고				
	계				

바. 충북교육정보문화원 설립 추진 현황 : 도교육청

사. 중앙정부 교육재정 유치 전담팀 구성 및 운영성과 : 도교육청

아. 교육장, 국·과장급 공모제 운영 실적 : 도교육청

자. 교직원단체와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사례 : 도교육청

6. 지역교육청에 비정규직 인력 배치 현황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교육청	직명	인원	담당사무(간략히)

<작성요령>

순회평생교육사, 상담사, 특수교육전담, 희망교육사, 순회치료사, 순회특수교사, 인턴사무원 기타 등

7. 지역교육청별 여비 지급 현황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교육청	과별	예산액	지급대상 인원	연간 출장 총 횟수	평균여비	과부족 사유
	교육과					
	관리과					

<작성요령>

- 작성연도 : 2008년도
- 여비 부족시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8. 승진·전보시 축하 화분 보내기를 다른 방법으로 계도한 실적 또는 사례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9. 2009년 수감기관 수감자료 제출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된 것 1부
-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경영 평가추진 시책 1부
- 다문화 가정 지원 실태 및 지원 사례 1부
- 다목적실과 인조 잔디운동장의 지자체 대응투자 현황 1부
- 일반화 가치가 있는 교육행정 우수사례 1편 이상

□ 요구위원 : 서수웅 위원

1. 단재상 사도부문 수상자 현황 : 도교육청

연도	수상자	비고(초, 중등 기재)

<작성요령>

- 작성기간 : 단재상 시행부터 현재까지

2. 고등학생 학업포기자 현황 : 도교육청

연도	구 분	인문계	전문계	비고
2006년	전체학생수(A)			
	학업포기자(B)			
	비율(B/A)			
2007년	전체학생수(A)			
	학업포기자(B)			
	비율(B/A)			
2008년	전체학생수(A)			
	학업포기자(B)			
	비율(B/A)			

<작성요령>

- 작성기간 : 2006~2008년
- 학업포기자 : 자퇴, 퇴학

□ 요구위원 : 성영용 위원

1. 학교병원 운영현황 : 도교육청

운영학교	협약병원	직원현황	대상학생수	협약기간	운영실적	비고

<작성요령>

○ 대상기간 : 2008~2009년 8월 31일 현재

2.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현황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단위:명)

학교명	배정인원(A)	채용인원(B)	미채용인원(C=A-B)	미 채용 사유	비고

3. 권역별 심화학습 운영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가. 현황

교육청	중심 학교명	운영 프로그램	참여학교별 학생수		강사현황			비고
			참여학교명	학생수	자체	타학교	외부강사	

나. 외부 저명강사 초청시 순기능, 역기능 기술

4. 교육정책 청문관계 운영 현황 : 도교육청

청문관 현황				위촉기간	운영실적	성과분석	비고
지역별	인원	분야별	인원				

<작성요령>

○ 대상기간 : 2009년

5. 원어민교사의 확대배치 현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원어민교사 배치현황

(2009. 8. 31 현재)

교육청	2008.12.31기준 원어민 교사수 (A)	2009년 확대 목표인원 (B)	2009년 목표 인원 (C=A+B)	2009. 8. 31 실제 배치인원 (D)	실적율(% (E=D/C)	비고

나. 원어민교사 자격 현황

(2009. 8. 31 현재)

교육청	총 배치 인원수 (D)	교사자격 (a)		TESOL자격 (b)		교사+TESOL 자격 (c)		교육학전공 (d)		교육관련 학과전공자 (e)		연수이수 (f)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합계													

<작성요령>

- 비율 : 소지자격(a~f)자수 / 전체 원어민교사수(D)
- 자격현황 : a - 교사자격만 소지 / b - TESOL자격만 소지 / c - 교사+TESOL자격 소지  
 d - 교육학 전공하였으나 교사자격 미소지 / e - 교육관련학과 전공 교사자격 미소지 f - 교사자격 및 TESOL자격 없음(단순연수 이수)

6.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의 상반기 실적 및 중간평가: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7. 길거리 상담의 상반기 실적 및 문제점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8. 학교관리자 노사관계 연수 중 교장 교감의 연수 실적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지역명	구 분		전체 인원(A)	연수 인원(B)				실적 (C=B/A)	비고
				2007년	2008년	2009년	계		
	교장	초등							
		중등							
	교감	초등							
		중등							

9. 일반교의 경우 보통교실의 냉방기 및 비품이 학부모 또는 자체예산으로 설치되어 도교육청의 냉방기 개선사업 대상에 미포함 되는 등 상대적으로 노후된 냉방기 및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바 일률적으로 내용년수를 적용하지 말고 실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적용할 의향은? : 도교육청

10. 2009학년도 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 강사 현황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교육청	학교명	운영 강좌수	운영 일수	강사현황				비고	
				전체인원 (A)	교사(B)		외부강사(C)		
					인원	비율(B/A)	인원		비율(C/A)

11. 학교별 학교회계 세출 예·결산 현황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연도별 : (단위:만원)

교육청	급별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과목	세출 예산액(A)	세출 결산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비고	
								사고 이월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계 (%)	불용액	비율(%)		
					인건비										
					학교 운영비										
					수익자 부담경비										
					예비비										
					계						( % )				

<작성요령>

- 급별 : 유(단설)·초·중·고 별로 작성
- 대상기간 : 2006~2008년 (연도별 기술)
- 학생수, 학급수 : 작성연도 4월 1일 기준 기재
-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계산 및 굵은선 부분 괄호안에 비율 기재(C/A)

12.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실태(2007~2009년)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단위:천원)

교육청	세부사업	사업내역	예산현황			비고
			2007년	2008년	2009년	

<작성요령>

- 세부사업, 사업내역은 세출예산서상 세부사업명, 사업내역명 기재
- 방과후학교 사업예산 제외

13. 제천학생야영장 운영대책 및 활성화 방안 : 제천교육청

14. 제천학생회관 수영장 운영현황 : 제천교육청

(단위:천원/명)

운영예산 총액 (09년도)	수입금액			사용인원			관리인원 (09년도)	사용기간 (09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총인원(학생)	2008년 총인원(학생)	2009년 총인원(학생)		
				( )	( )	( )		~ ( 일간)

<작성요령>

- 기간 : 2009. 8. 31까지
- 사용인원 : ( )는 학생사용 인원수를 기재하되 총인원에 포함 작성



□ 요구위원 : 이상일 위원

1. 방과후 중심학교(에듀코어스쿨) 운영현황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가. 중심학교 선정과정

나. 중심학교 확대 지정 계획

다. 우수강사 채용방법

라.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대책

(학원으로 보내기 위해 일찍 하교 시키는 학부모에 대한 홍보방안)

마. 저소득층의 수강비 지원 방안

2. 비만치료 지도교실 운영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가. 관내 초·중학생 비만 현황

교육청	급별	전체 학생수	비만 학생수	비율(%)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계				

나. 비만교육 프로그램 및 추진 실적

□ 요구위원 : 정무 위원

1.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확보 상황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교육청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담교과															
	정원(A)															
	현원(B)															
	결원(A-B=C)															

<작성요령>

- 도교육청 도내 초, 중학교 취합 통합 작성, 4개 지역교육청은 관할 초, 중학교 작성
- 전담교과 :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과학, 실과

2.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수 현황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유형		A	B-1	B-2	C	계	A	B-1	B-2	C	계	A	B-1	B-2	C	계
학교수	초															
	중															

<작성요령>

- 도교육청 도내 초, 중학교 취합 통합 작성, 4개 지역교육청은 관할 초, 중학교 작성
- 유형
  - A형 : 대부분의 과목에 교실제를 적용하는 것
  - B-1형 : 수학, 과학 집중형
  - B-2형 : 영어 집중형
  - C형 :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형
- 대상기간 : 2009년도는 9. 1현재 계획도 포함

3. 초등학교 실과 수업을 위한 실습실 실태 조사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교육청별	청주	제천	괴산·증평	진천
학교수(A)				
보유수(B)				
비율(B/A)				

<작성요령>

- 대상기간 : 2009년 8월 31일 현재
- 실 습 실 : 초등학교 4, 5, 6학년 실과 수업을 위한 실습실

4. 전국 소년 체육대회 시·군 교육청별 메달 현황 : 도교육청

연도 교육청	2007년					2008년					2009년				
	금	은	동	계	코치	금	은	동	계	코치	금	은	동	계	코치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계															
전국 순위	( )					( )					( )				

<작성요령>

- 코치 : 지역교육청에 배정된 코치의 인원수를 기재  
 도교육청 소속은 청주시에 포함하고 ( )로 표시
- 전국순위 : 금메달 집계 순위를 기재. 점수 집계 순위는 ( ) 안에 기재

5. 일선학교의 소방 안전 교육 및 소방정밀 점검 현황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연도	구 분 학교급별	소방 안전 교육				소방 정밀 점검				비고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007년	학교수(A)									
	실시학교(B)									
	비율(B/A)									
2008년	학교수(A)									
	실시학교(B)									
	비율(B/A)									
2009년	학교수(A)									
	실시학교(B)									
	비율(B/A)									

<작성요령>

- 도교육청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취합 통합 작성, 4개 지역교육청은 관할 초, 중학교 작성
- 대상기간 : 2007~2009년(2009년은 향후 추진계획도 포함 작성)

6. 특수학급 설치교의 장애 이해 및 체험활동 실시 현황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구분		본청	청주	제천	괴산 증평	진천	본청	청주	제천	괴산 증평	진천	본청	청주	제천	괴산 증평	진천
특수학급 설치교(A)	초															
	중															
체험활동 실시교(B)	초															
	중															
비율 (C=B/A)	초															
	중															

<작성요령>

- 도교육청 도내 초, 중학교 취합 통합 작성, 4개 지역교육청은 관할 초, 중학교 작성
- 특수학교는 제외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대상
- 대상기간 : 2009년도는 향후 추진계획도 포함 작성

7. 수업연구 발표대회 참가 및 입상자현황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교육청	연도	급별	전체 교원수(A)	참가지수 (B)	비율 (B/A)	입상자(수업★스타)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계	
	2007년	유								
		초								
		중								
		특수								
		계								
	2008년	유								
		초								
		중								
		특수								
		계								
	2009년	유								
		초								
		중								
		특수								
		계								

<작성요령>

- 전체교원수 : 작성연도 4. 1일 기준
- 도교육청 : 도대회 현황 제출, 지역교육청 : 시·군대회 현황 제출(학교대회 제외)

8. 학교 급식 실태 조사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연도	구 분 의자회전율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전체 학교수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5회전	전체 학교수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5회전
2007년	학교수													초( ) 중( )
	비율(%)													
2008년	학교수													초( ) 중( )
	비율(%)													

<작성요령>

- 대상기간 : 2008년 ~ 2009년
- 의자회전율
  - 예) 급식소 의자가 50개인데 재학생이 130명이면  $50/130=2.6$ (첫째 소수점자리 반올림)  
⇒ 3회전
- 비고란에는 위탁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수 기입

9.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현황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연도	구 분 사고별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비고
		교통사고	물놀이	기타	계	교내	교외	계	
2007년	초								
	중								
2008년	초								
	중								
2009년	초								
	중								

<작성요령>

- 도교육청 도내 초, 중학교 취합 통합 작성, 4개 지역교육청은 관할 초, 중학교 작성
- 대상기간 : 2007년 ~ 2009년(9. 1일 현재)

10.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지원 현황 : 도교육청,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단위 : 천원)

지역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교육청											

<작성요령>

- 본청 및 지역교육청 예산 및 집행액 기재
- 2009년 8. 31일 기준

11.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과 관련하여 관내 중학생의 외지고등학교 진학 현황

: 제천, 괴산·증평, 진천, 옥천교육청

교육청	연도	내역	2006학년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비고
			명	명	명	
		졸업생수	명	명	명	
		외지진학수	명	명	명	
		비율(%)				

<작성요령>

- 대상학생 : 중3학년 졸업생중 외지 진학생 수